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86 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윤한홍 • 김장겸

강대식 · 최수진 · 엄태영

박정훈 • 조지연 • 고동진
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시행령에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, 계약의 효력 발생·변경·해지,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,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.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,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, 오히려 재계약이 체결되는 등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·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,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"선수가"를 "선수 또는 체육지도자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선수와"를 "선수 또는 체육지도자와"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 또 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	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
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・운영	①
되는 운동경기부(이하 "직장운	
동경기부"라 한다)가 소속된	
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	
경기부 <u>선수가</u> 대등한 입장에	<u>선수 또는 체육지도자가</u>
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	
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	
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	
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	②
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	
경기부 <u>선수와</u> 계약을 체결할	<u>선수 또는 체육지도자와</u>
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	
의무에 관한 사항, 분쟁해결에	
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	
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	
을 체결하여야 한다. <후단 신	
<u>설></u>	<u>이 경우 체육지도자와의</u>
	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의 신체
	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
	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
	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

	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
	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
	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